

## [붙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간담회 발언문 및 자료집

### ■ 이주노동자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한국에 처음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살아오면서 이주노동자로서 겪는 차별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 공장에서 일하면서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도 많았고 관공서든 어딜 가든 이주민이라서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변한 것도 있지만 이주민에 대해서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입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16개 아시아 지역 국가 노동자들이 일하러 들어와서 26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들은 방문취업제로 21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원, 결혼이주민, 유학생, 동포비자, 영주권자 등 많은 이주민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온지가 오래 되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무권리에 일회용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 착취와 폭력의 대상, 차별과 혐오의 대상만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이주 정책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업주 허락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노동자도 있습니다.

열악한 숙소에 살면서도 숙식비로 수십만원 씩 떼이기도 합니다. 최초 3년 계약이 끝나면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어야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노동기간을 더 늘일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농어업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으로 인해 휴게,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극심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초과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만 모든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 고용허가제라는 차별적인 법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는 4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가족을 한 번도 초청할 수 없어서 가족결합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늘 폭력적인 강제단속의 위험에 시달리며 노동착취를 당합니다. 해마다 단속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들이 생겨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더해 성희롱 성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도 더 많이 당합니다. 산재발생, 산재사망율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D에 Death를 더해 4D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맨 아래에서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일을 하며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평등한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주민세, 지방세, 각종 간접세 다 내고 건강보험 내고 있고, 특히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주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최저임금도 못받으면서도 12만원이나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래 의무가입이었는데 임의가입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가입된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안되고 무급휴직이나 해고를 당해도 아무런 지원도 없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안뜨니 고용기간이 끝났다고 집에 갈수도 없습니다. 취업기간을 충분히 연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차별을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인종차별을 철폐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 금지,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장,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 단속 금지, ▲이주민을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안 재검토 등 구체적인 권고들을 한국정부에 했습니다. 또한 2022년 제출 예정인 다음 국가보고서에는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 고용허가제 개정과 노동법 상 이주민 차별 해소, 이주 구금,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 이주아동 의무

교육과 관련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차별금지  
법이 제정되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주민 · 난민 차별 증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 난민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2020. 6. 25.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목 록 ◆

1. 난민 심사, 출입국 행정서비스 차별 사례
2. 인종차별 선동세력, 정치권력, 종교 차별 현황
3. 증오범죄, 고용, 기타 차별 사례
4. 언론
5. 제도개선

# 1. 난민심사, 출입국 행정서비스 차별 사례

## < 주요내용 >

- ◆ 난민 심사 과정에서의 공무원, 통역인에 의한 혐오 발언
- ◆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혐오성 질문, 심사
- ◆ 출입국항 회부 심사 절차 중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 의한 혐오발언, 폭언
- ◆ 기타 출입국외국인청, 동사무소, 구청 행정 서비스 제공 과정 혐오 발언, 난민지위 아웃팅

### 난민 심사 중 차별 사례

#### ○ 출입국항 불회부 이후 송환회유 과정에서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 의한 혐오발언, 폭언<sup>1)</sup>

- "7~8개월 동안 송환대기실에 머물면서, (중략) 경비원과 항공사 직원에게 나쁜 말들을 수없이 들었고 그들은 항상 나에게 '한국은 당신의 나라가 아니니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한명은 심지어 계속 송환대기실에서 머무르려면 '경찰을 데려와 비행기에 억지로 태우겠다'고까지 했어요. 항상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경찰을 불러서 쫓아낼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씨바'라고 했어요"- 난민신청자 ㄱ

- "우리를 감시하던 담당관은 우리와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하면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거나, 한국어로 '몰라 시발'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

1)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난민인권네트워크 링크: <https://nancen.org/1536>

랐습니다"- 난민신청자 ㄴ

- "대사관에 연락하겠다. 강제로 데려가겠다. 00정부에 당신을 알리겠다

'는 협박을 받았어요"- 난민신청자 ㄹ

- "자주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곳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고 말하던 담당관의 말은 우리를 아프게 했고, 이것은 굴욕적이었습니다

"- 난민신청자 ㄷ

- "4, 5명 정도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나와 가족의 모든 짐을 다 밖으로 꺼내고 나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당신이 저 남자랑 함께 가지 않으면 이혼을 하거나, 저 남자와 헤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그를 반드시 돌려보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협박을 했고 임신 6개월 상태였던 아내가 앉아있던 매트리스를 끌어 당겼어요" - 난민신청자 ㄹ

- "송환대기실 직원이 저에게 한국어로 '계속 가자'라고 하면서 떠밀고, 여권을 가져와서 계속 너희 나라고 가자라고 하니까 '00(국적)이라고 했다가 00(국적)이라고 했다가'하는 것을 들었어요. - 난민신청자 ㄹ

- "나는 경비요원에게 내가 아프다는 것을 얘기하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항공사 직원은 내게 '약이 필요하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한다'고 했어요"- 난민신청자 ㄹ

### ○ 난민 심사 면접 중 혐오발언

- "서울 난민사무소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이 다 끝나는데 마지막에 면접관이 제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 너같은 새끼에게는 난민인정 안 해줘'라고 했습니다. 면접받는 내내 범죄 취조 받는 것 같았어요" -난민신청자 B

### ○ 성소수자 난민 심사 중 심사관에 의한 혐오성 질문2)

- "면접 조서를 보면 '정상인이 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

2) 2020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2탄: 성소수자난민 심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느냐’는 식으로 심사관의 편견이 드러나는 질문들도 있었고, ‘성관계를 얼마나 해봤냐, 자주 해봤냐’, ‘성관계를 할 때 여러 명과해본 적 있느냐’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런 질문들을 왜 하는가 싶은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성소수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것 같다. - 성소수자 난민 조력자 C

- “면접에서 성관계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들을 했다. ‘역할 놀이 한 거 아니었냐’, ‘어린 나이였는데 성관계를 어떻게 했냐’ ‘행위를 자세히 설명해달라’ 등.

개인적인 일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대답을 해야 했다. 그러자

심사관이 ‘같은 성끼리 어떻게 성교를 하나요’ 물어봤다. -성소수자난민 조력자 D

- “면접 조서를 보면 심사관 본인이 개인적인 흥미로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성관계 할 때 신청자는 어떤 역할이었나요? 탑, 바텀 중?’ ‘신청자의 파트너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말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파트너의 어떤 점에 주로 끌리나요?’ ‘만났던 파트너랑 동거했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게 된 사유를 말 할 수 있나요?’ 신청자의 파트너가 몇 명 있었는지, 난민사유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심사관이 궁금해서 물어 본 것 같은, 왜 물어보는 건지 싶은 질문들이 있었다.”- 성소수자난민 조력자 E

- “심사관도 판사들도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성소수자 난민 당사자는 심사를 겪으면서 2차적인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흥미 위주의 질문을 받으면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는 것 아닌가? 난민 심사의 심사관과 판사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다.”- 성소수자 난민 조력자F

## ○ 성소수자 난민 통역관의 혐오



- “통역인들이 면접 내용에 대해 비밀보장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본인이 통역했던 내용을 발설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드러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성소수자난민 조력자 G

## □ 기타 출입국외국인청 차별 사례

### ○ 난민 관련 출입국 행정

- “2017년 쯤에 서울 출입국 공무원이 제 아내에게 ‘너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 공무원이 제 아내의 얼굴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 난민인정자 C
- “난민 신청서 접수를 하는데 제게 신청 사유를 큰 소리를 묻더니 직원 들끼리 제 난민신청 사유를 들먹이며 비웃었습니다”- 난민신청자 z
- “출입국 직원이 큰 목소리로 ‘네 남자친구는 어딴냐’라는 식의 사적인 질문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성정체성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난민신청자 H

### ○ 체류 민원

- “출입국에 갔더니 출입국 직원이 제게 ‘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 내가 허락할 때까지 서 있어라’라고 했고 허리디스크가 있는 저는 계속 해서 앉을 수 없는지 요청했지만, 직원은 거절했습니다” -인도적체류자 G

### ○ 귀화

- “귀화 면접을 보는데 직원은 핸드폰 게임이나 하면서 제가 '어짜피 귀화면접에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난민인정자3

## □ 주민센터 등 기타 행정 서비스 차별 사례

### ○ 동사무소 민원 과정에서의 혐오, 인종차별

- “동사무소 너무 가기 싫어해요. 내가 가면 ‘난민 왔어!’라고 큰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오면 막 “ㅋㅋㅋ” 하면서 웃어요. 동사무소 혼자 가기 너무 싫어서 남편 다니는 회사 사람이 같이 갔는데도 사람들이 또 “ㅋㅋㅋ” 거렸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왜 웃냐고 남편 회사 사람이 화내니까 그때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 해서 동사무소에 혼자 갔는데 공무원이 서류를 안 줬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랑 같이 갔더니, 거기서 유치원 선생님과도 동사무소와 다툼이 있었다. 혼자 가면 도와주지도 않아요.” -난민 9

### ○ 구청

- “구청에 가면 항상 직원들이 저를 개 보듯이 봐요. 제가 어떤 민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를 해요. 살다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구청에 같이 가줄 수 있나요? 혼자서 가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난민 10

## 2. 인종차별 선동세력, 정치권력, 종교 차별 현황

### 〈 주요내용 〉

- ◆ 인종차별 선동 혐오세력의 조직적 활동, 비영리법인 등록 등 정부의 인종차별 제재 기준 부재
- ◆ 특정 종교에 의한 가짜뉴스 확산 및 혐오 존재
- ◆ 정치권력의 혐오선동 및 제도화

### 인종차별 선동 혐오세력의 조직적 활동

#### 인종차별 선동 난민혐오세력 기자회견,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 난민대책국민행동 등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은 끊임없이 행정소송을 하며 국내 체류하고 돈을 번다”<sup>3)</sup>,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 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며 난민법 폐지를 주장<sup>4)5)</sup> 꾸준히 온/오프라인 반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 예) 2019년에는 출입국항 장기간 구금되었던 루덴도 난민 가족이

3)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451>

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2006244138841>

‘가짜’라는 웹툰 제작.

- 2018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서 일부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명시하자, 이를 특정 국가나 특정 종교인이 마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우선시되는 것인양 선전함으로써 인종차별을 선동

### ○ 비영리 법인 등록

- 최근 난민대책국민행동은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며 정부에 의해 공식 인가 받은 단체가 됨.

### □ 종교계의 ‘이슬람 난민’, ‘난민’ 혐오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2019년 10월에 발표한 된 ‘혐오와 한국 교회’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가 혐오하는 대상은 공산주의·사회주의, 북한, 국내의 좌파에서부터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슬람교도, 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통계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난민은 이슬람 등 불온 문화를 전파하므로 임시 보호도 안된다’는 의견은 개신교인이 23.0%로 비개신교인 18.1%보다 3.9%p 높게 나타남.

- 중앙일보가 2018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를 구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난민’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땐 우호적 태도(50.7%)가 적대적(44.7%) 태도보다 많았다. 하지만 질문 대상을 ‘이슬람 난민’으로 좁혀 물었을 땐 우호적 답변은 28.7%(매우 우호 2.8%, 약간 우호 25.9%)에 그쳤고 적대적 답변은 66.6%(약간 적대 36.2%, 매우 적대 30.3%)

6) <https://www.vop.co.kr/A00001496142.html> 민중의 소리

## □ 정치권력의 혐오선동 및 제도화

### ○ 제도 개악의 근거가 되는 인종차별 및 혐오7)

- 2018년 제주 예멘 이슈 당시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은 “난민법 폐지, 난민의 흔적을 지워라”,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어떤 난민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 조 의원은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와 난민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국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난민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의료급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에 '난민'이 들어간 조항을 전부 삭제하자고 제안.

- 강석호 의원은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 난민과 브로커는 엄벌하기 위해서는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기준은 강화해야 한다.”며 “난민 심사를 위한 사전 난민심사 도입”을 주장

- 이연주 의원은 “예멘 가짜난민 인도적 체류 반대, 전원 송환”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며 거주지를 제한하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난민 신청을 금지, 생계비 조항 삭제 법안 발의

- 2019년 6월 19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부산에서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 그동안 해온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낸 것도 물론 없고요”, “(외국인을)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

### ○ 21대 총선의 인종차별적 유세 만발8)

7)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13619](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13619)

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기독교자유통일당 양세화 후보(서울종로), 2020년 4월 10일 서울 동숭길 주변 선거벽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겠습니다.”
- 기독교당, 2020년 4월 9일 전라남도 광주 수완지구 임방울대로 근처 “동성애 / 이슬람 없는 청정국가 이룩”

### 3. 증오범죄, 고용, 기타 차별 사례

#### 〈 주요내용 〉

- ◆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 확산, 혐오선동 이후 관련 증오범죄 잇따라
- ◆ 구직, 고용 중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적 임금, 노동형태 등의 처우 및 폭언 등으로 차별 경험

#### 증오범죄 사례

##### ○ 제주예멘 이슈 ‘이슬람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 확산 이후 이슬람 배경의 난민에 증오범죄 사례 증가

- 제주 예멘 이슈 이후 다수의 난민이 SNS등을 통해 혐오 메시지를 받음. 난민인권센터에 접수된 혐오범죄 피해 사건은 모두 살해 협박이나, 물리적 공격 등을 받음. "Wewill follow you until we cut your neck", “너네 나라로 돌아가”, “정부가 너희같은 무슬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90프로이상은 너희들을 원하지 않는다", "니가 가짜 난민인 것 다 안다", "너는 불법체류자다" 등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폭행한 사건 또한 발견됨.

- 단식농성 중인 난민의 SNS 계정을 추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현장에까지 찾아와 반대집회를 조직. 피해 사례 중 일부는 법적 제재를 시도해왔으나, 형사 처벌의 범위에 해당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제재가 어렵거나 사건 접수 자체도 물리적 폭행의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

- 혐오 범죄의 확장은 개별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인종차별선동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예멘 난민의 SNS계정이 공유되거나, “\*\*동 \*\*에 있는 것 같아”, “\*\*게스트 하우스에 있어” 등 실제 거주 지역이 거론됨과 함께, “난민 죽이러 갈 사람 모집한다” 등의 글 게재.

## □ 고용 차별 사례

### ○ 구직 차별

-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는 이유로 심한 인종차별을 받았고,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다”- 난민신청자 A<sup>9)</sup>

- “제가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직업소개소 사람은 ‘너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일자리 연결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 난민1

### ○ 고용 중 차별

- “항상 난민신청자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야해요. 암묵적인 룰이에요. 난민신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용비자를 가진 다른 이주민들이 다 가고나서도 끝까지 남아야해요. 사장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532347&sid1=001>

어렵게 구한 일이니까” - 난민5

- “24시간 쉬지않고 공장에서 일한적도 있어요. 인도적체류 비자를 가져가면 고용주들이 이게 뭐냐고, 이런건 취업시켜줄수 없다고 말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는걸까요”-인도적체류자 9

- 남편 회사의 공장장이 한국 사람한테는 욕 안 하는데 남편한테는 개새끼, ~ 새끼, 왜 제대로 일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참아요. 회사 나가면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난민 8<sup>10)</sup>

### ○ 차별적 임금 적용

- 같은 직장에 있는 한국 여성들한테는 비싼 부품 맡기고. 우리는 핸드폰 설치 하거나 조그만거 힘든 거, 한 박스 채우는 데 세 시간 네 시간 걸리는 거를 맡깁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해도 하루 많이 벌면 8천 원, 만 원밖에 못 벌니다. -난민 8

### □ 기타 일상적 인종 차별<sup>11)</sup>

- “오직 한 번만 찬스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몇 년 산 식당 사장님만 나를 받아줬다. 그 식당 사장님이 미국에서 몇 년 살아서 오픈마인드인데, 내가 싱글맘이고 아이도 있고 한국말도 못하고 히잡도 쓰지만 일 열심히 할 테니 받아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주방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허락해 주면 받아준다고 했는데, 주방 아줌마들이 인종차별이 심했다. 왜 아줌마들이 왜 히잡 쓰냐, 왜 살이 많이 췌냐, 말이 많았다. 처음에 이거(히잡) 뭐냐고 물어보고 아줌마들이 구글 검색해서 히잡 뭘지 검색했다.” - 난민 7

- “길을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내 히잡을 벗겼다. 한 번은 길에서, 한

10)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국가인권위, 2019

11)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국가인권위, 2019



변은 마트에서.” -난민 9

- 제가 서울 외곽에 있는 클럽에 갔을 때의 일화인데요. 그곳에는 외국인들은 거의 없었고 그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흑인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와 클럽에 들어가자 거기 있던 모든 한국인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옆으로 와서 피부를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곧 젊은 한국 여성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모두 제 피부색에 신경이 쓰이는 듯했습니다. 제가 급기야 “저한테 뭐 잘못된 게 있나요? Is there anything wrong about me” 라고 묻자 뒤에서 “흑인black, 흑인black”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sup>12)</sup>- 인도적체류자 7

## 4. 언론

12) 한국거주난민에세이집, 안녕 한국

### 〈 주요내용 〉

- ◆ 언론 문제적 헤드라인, 인종차별/비하용어 지속 사용
- ◆ ‘가짜난민’ 담론의 유포
- ◆ 허위 사실, 가짜 뉴스 지속 보도/ 언론경쟁이 난민혐오 부추여
- ◆ 혐오를 조장하는 뉴스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 부재

## □ 제안배경

### ○ 문제적 헤드라인, 인종차별/비하용어 사용

- 제주예멘이슈 당시 언론 기사 제목 ‘이슬람 난민 점령’, ‘난민 쇼크’ ‘뜨거운 감자’ 등의 자극적인 언어 사용, 이 가운데 ‘가짜 난민’, ‘불법난민’, ‘위장난민’, ‘불법체류자’, ‘기획난민’을 비롯한 난민 당사자를 묘사하는 비하용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거나, 통계자료를 맥락적 분석 없이 인용한 사례

### ○ ‘가짜난민’ 담론의 유포

- 예멘난민 입국 이후 연합뉴스 등 10개 이상의 언론은 ‘법무당국이 이들의 난민신청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무사증제도를 이용한 ‘가짜난민’의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를 일괄적으로 보도. 이후 집중적으로 ‘가짜’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한 기사 보도 됨

### ○ 가짜뉴스

- 성폭력 범죄에 관한 무슬림에 대한 가짜뉴스들은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예멘 난민에게 투사하도록 유도. 반이슬람 정서나 태도는 ‘반난민’으로, 난민 반대는 한국 시민사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애국적 행위로 미화.<sup>13)</sup>

13)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국가인권위, 2019

- 예멘 이슈 당시 SNS와 유튜브, 블로그, 맘카페 등을 통해 가장 많이 확산된 가짜뉴스 중 하나는 “난민신청을 하는 즉시 정부가 난민에게 생계비로 매달 138만 원을 준다”라는 것. 이슬람교인을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 성폭행이 급증했다는 뉴스 또한 많이 예멘난민 뉴스와 함께 회자. 이후 JTBC뉴스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것 밝혀짐

- 2018년 7월 8일, 연예 보도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는 한 예멘 난민이 <알자지라>와 인터뷰하며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보도. <디스패치>는 이 난민이 “제주도에서 사느니 예멘으로 돌아가 싶다”라고 말했다며 “제주 예멘 난민들 해외 인터뷰 논란… “한국 형편없어 돌아가고 파””라고 자막을 달. 그러나 이 예멘인이 실제 <알자지라>와 인터뷰한 내용은 “예멘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 즉시 예멘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자랐고 학교가 있고, 친구와 가족이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이기 때문이다”였음. 제주도의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실이 밝혀지자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를 삭제

- 2019년 6월 21일 노골적으로 인종간 혐오, 갈등, 폭력을 부추기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음. 기사는 2019년 6월에 벌어진 인천시와 서울 일부의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근래 국내에 급격히 유입한 ‘이슬람 난민’ 중 일부 ‘극단주의자’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음. 기사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익명의 정보 당국 관계자의 발언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테러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문래동도 붉은 수돗물 … “일부 이슬람 난민 소행일수도”」로 내세운 것은 매우 노골적이고 악의적.

### ○ 언론 경쟁이 난민 혐오 부추여<sup>14)</sup>

- “언론에서 기사를 쓰고 먹히니깐 계속 쓰는 건지 선후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난민을 욕하는 기사는 좀 팔리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

14) 같은글

요” -언론인 10

- “크게 취재국에서 보도할 때 어떤 사건 사고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헛갈릴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식의 표현, 워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론인 9

- “반드시 특정적이거나 특정인종, 혹은 특정 종교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도에 대해서 당연히 자제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솔직히 자제하는 게 언론인이 해야 될 의무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언론인 9

## 5. 제도개선 과제

### 〈 주요내용 〉

-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
- ◆ 인종차별 정의의 부재, 혐오범죄의 제재 근거 기반 마련 필요
- ◆ 차별금지법은 제도적 인종주의 대항의 근거가 됨

### 기존 제도의 한계,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 본질이 조직법에 해당하여 차별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의 측면에서 1개 조항으로 정의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간접차별, 괴롭힘 등의 다양한 차별유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실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차별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걸림돌이 됨. 따라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만으로는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기 어렵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의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는 점등에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대신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을 받아옴.<sup>15)</sup>

15) 차별금지법, 궤도를 올리다, 조혜인

○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서도 인종차별의 정의조차 찾을 수 없음. 인종적 묘사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보도를 하면 안 된다(방송법 제6조 제2항)는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이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에서도 무엇이 인종차별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sup>16)</sup>.

○ 이슬람과 같은 특정 종교 출신자들이나 난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추방의 위협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단체를 자발적인 시민운동 단체로 승인하고 있고, SNS에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문자나 이미지로 구성된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의 처벌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음. 국가가 인종차별을 근절해야하는 직간접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난민심사 과정에서의 혐오발화, 혐오성 심사 제재의 어려움

- “심사관이 ‘나는 다 알고 있고, 난민 대부분 가짜인 것 같다. 너도 가짜인 것 같은데 내가 한 번 밝혀 볼테니 어디 버텨봐라’와 같은 태도가 배어 있다.” “출입국은 신청자가 ‘한국에 잠깐이라도 더 체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지어낸다’라는 태도이다.”

- ‘성소수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편견은 난민 절차에서 성생활과 성적행동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성적으로 노골적인 질문에 관한 국제 기준은 “신청자의 성생활에 관한 구체적 질문은 피해야 하나 이 같은 혐오성 심사는 단기적 교육/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만 중단시킬 수 없음.

○ 공적 영역에서의 인종차별 정의의 부재

-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을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불친절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타남. 업무가 과중하여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불친절이지 차별의 의도가 있기 어렵다는 것.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관련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비해 인력과 예산이 그에 따라 증

16) 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국가인권위, 2019

가하지 않는 업무 환경이 불친절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 불친절이 문제  
이나 인종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

## 기타: 제도적 인종주의 대항의 근거

○ 난민은 각종 제도적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 피해를 받고 있음. 이에  
차별금지법이 정의하는 ‘차별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차  
별금지법에 국가의 책무조항이 명시되어 차별시정책무를 요구할 근거가  
명확해질 것임